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6. 20.

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24호로 2025년 5월 30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일수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배우자의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‘배우자 출산휴가 기간’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개정(2024. 10. 22.)되었으며,
 - 이에 따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은 이를 반영하여 개정(2025. 2. 11.)되었고, 더 나아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 기간을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함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별표3은 ‘배우자의 출산’시 10일→20일로, ‘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’ 15일→25일로 각각 경조사 휴가를 10일씩 확대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지난 6월 13일, 구청장이 제출한 동일한 내용과 취지를 담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심사하여 원안가결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 집행기관 및 의결기관 공무원 간의 복무 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참고 자료

1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 <개정 2025. 2. 11.>

경조사 휴가일수표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2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3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